

제품안전 질의응답

Q & 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품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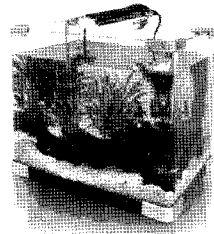
Q

Question

특수 형광램프 안전인증 대상여부

당사는 외국으로부터 수족관용품을 수입하여 국내 수족관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국내 유명 할인마트 또는 백화점에서는 당사가 수입하는 특수 형광등과 PL등에 대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확인서를 요구하나 당사에서 취급하는 전기 제품이 안전인증대상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해수어, 산호용 블루형광등, PL등
- 수초 성장용 PG형광등, PL등
- 파충류용 UV-B 형광등, PL등
- 살균 UV-C등



A

Answer

해수어·산호용 형광램프, 수초 성장용 형광램프, 파충류용 형광램프 등 수족관 동식물에 필요한 색의 빛을 발광하기 위한 형광 물질을 도포한 칼라램프 및 파충류용 자외선을 발광하기 위한 형광 물질을 도포한 램프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입니다. 그러나 동 램프를 점등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기구가 수족관 등에서 분리되어 사용이 가능한 구조의 것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조명기구'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조살균등의 경우, 파충류에 필요한 자외선을 방출하기 위한 램프는 백열전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자외선 램프가 부착된 기구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소독기(살균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되므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Q

Question

에어콘 실내기의 안전인증대상 여부

저희가 이번에 제작하는 냉동공조 시스템에 사용되는 [실내기]에 대해서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격소비전력: 154W
- BLDC 모터: 구동 전원(311/15/5V), 소비전류(정격 1A 이하)
- 구동 보드: 입력 전원(220V), 출력 전원(311/15/5V)
- Fin Coil Unit: 실내(공기)와 열교환을 위한 장치(R22 냉매 사용)
- 기타: 실내기 동작 상황 표시(LED)용 보드, 실내 기구부, 팬

A

Answer

문의하신 제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동실내기와 실외기가 결합된 완성품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2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 중 '냉방기 및 제습기'에 해당하므로, 제품 출고 전에 반드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하였을 경우에는 불법 전기용품으로 간주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Q

Question

고압배전반의 콘트롤용으로 사용되는 저압분전압관련 안전인증대상 여부

고압배전반의 콘트롤용으로 사용되는 저압분전압의 제품(배선용차단기, 전자개폐기)을 사용하는데 변압기 2차측 전압이 AC 480V입니다. 다음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전기용품안전인증 세부범위안에 의하면 전압의 범위가 380V초과 500V이하로 되어 있는데 AC 460V 또는 440V로 안전인증 받은 제품을 AC 480V로 전압파생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AC 480V는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는 전압이며, 표준전압에도 맞지 않은 전압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AC 460V 또는 440V로 인증받은 제품을 다시 AC 480V로 안전인증을 다시 취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Answer

차단기의 정격전압이 380V 초과 500V 범위에서 정격전압을 변경하여 안전인증을 받고자 해도 파생모델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파생모델로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주요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쳐 안전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Q

Question

오존살균수기의 안전인증대상 여부

오존을 이용하여 물속에 있는 살균들을 살균시키는 'OH라디칼 살균수기'를 판매중입니다. 조달청에 우수제품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서류를 준비하다가 보니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이 제품이 전기안전인증 대상품목인지 문의드리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

Answer

오존을 이용하여 살균수를 제조하는 오존살균수기(품명: OH라디칼 살균수기)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동 제품으로 인하여 실내 오존(O³)농도가 0.05ppm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므로 제품 제조 시 이점 유의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 전기이온수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됩니다.

Q

Question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문구 표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문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Answer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문구를 사용 가능하나 반드시 표시할 필요는 없으며,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품목별로 규정된 「안전·품질 부속서」상 표시 '형식'에 의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그렇지 않은 품목으로 구분됩니다.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품목: 가죽제품, 농업용 합성수지제 필름(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외한다), 습기제거제, 화장비누, 화장지, 가구, 가정용 공구, 간이 빨래 걸이, 면봉, 보안경, 선글라스, 안경테, 텐트 등 13품목

또한, 「품질경영촉진법」이란 법령은 2000년 12월에 변경된 법률명으로 앞으로는 「품질경영촉진법」이라는 문구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공산품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라는 문구를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Q

Question

액체타입 방향제의 제품검사 문의

액체타입 방향제의 향을 장미/자스민/라벤다 등 여러 종류로 할 경우 각 향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대표향 1개만 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Answer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향제'의 모델 구분은 「자율안전확인 부속서 7」 '생활화학 가정용품'의 제2부 방향제 안전기준 6.1항에 의해 종류별(액체타입, 에어졸 타입 등), 주요 성분별로 구분합니다.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향제' 종류 및 주요 성분이 동일할 경우 동일 모델로 간주됩니다.

Q

Question

일반양초의 자율안전확인대상 품목 문의

향이 없는 무향 일반양초가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속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Answer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향제'는 「건물의 실내, 자동차 안 등 일정한 공간 내에 지속적으로 좋은 냄새를 발산시켜 사용자의 기분을 상쾌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액체상태(에어로졸상, 젤상, 함침물을 포함한다)의 화학제품 및 향초」를 말하므로, 향이 없는 일반 양초는 자율안전확인대상 '방향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